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지정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33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 전시납북자 현황 등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북한에 의해 납치된 10만여 명의 납북자와 그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에 6·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 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6·25전쟁 기간 중 북한으로 납치된 납북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① 납북자를 추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 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할 수 있고, 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납북자”로 정의하면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¹⁾ 체결일(1953. 7.27.)을 기준으로 전시(戰時)납북자와 전후(戰後)납북자를 구분하고 있음.²⁾

1)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임.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6·25납북자법”)은

□ 2017년 5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³⁾가 발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⁴⁾에 따르면 전시납북자는 95,456명으로 추정되고, 위원회는 피해신고사건으로 접수된 5,505건 중 중복 신청 등을 제외한 5,375건을 심사하여 이 중 4,777건에 대해 납북자로 결정하였음.

<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결정자 현황 >

단위: 건(명)

구 분	전시납북자	신청	심사	전시납북결정
인원(명)	95,456	5,505	5,375	4,777

자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2017. 5.) pp.32-33.

6·25전쟁 기간(1950.6.25.~1953.7.27.)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전 이후에 발생한 납북과 관련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에 근거하여 납북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고 있음.

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시납북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납북자가 대거 발생하였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납북자를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여 자진 월북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여 남은 가족들을 감시하거나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등을 적용하기도 하였던 바,⁵⁾ 전시납북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일을 지정·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 다만, 정부 주관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지정과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법정기념일의 지정 기준의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을 예시하고 있으며, 그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또는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등에는

5) 전시납북결정자 4,777명 중 연좌제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322명(6.7%)이며,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험·취업·승진 혹은 군복무상 불이익을 주장한 사람이 195명(60.6%),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감시 등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람이 104명(32.3%), 가택수색이나 재산압류 등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주장한 사람이 23명(7.1%)으로 나타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p. 259.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⁶⁾

- 참고로, 국가기념일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정기념일의 지정은 주관부처인 통일부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통일부는 1950년 6월 28일이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민간인들을 납치하기 시작한 날이므로, 납북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일 지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법정기념일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참고자료】 전시납북자 현황 등⁷⁾

- 6·25전쟁 중 북한은 상당수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 동원 및 인민군 충원을 위해 다수의 인원을 강제동원
- 당시 정부발간 명부 등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전시납북 진상규명 실시
 - 2010년 9월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6.25전쟁 중 납북된 남한 민간인의 규모를 잠정적으로 10만명 내외로 판단

① 연령별 분포

연령대	인원 (명)	비율 (%)
10세 미만	255	0.3
10대	10,207	10.7
20대	54,802	57.4
30대	18,718	19.6
40대	6,297	6.6
50대	2,959	3.1
60대	919	1.0
70대	194	0.2
80대	27	0.0
90세 이상	5	0.0
불 명	1,073	1.1
합 계	95,456	100.0

자료 출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7) 통일부(납북자대책팀 제출, 2024.8.6.)

② 성별 분포

성 별	인원 (명)	비율 (%)
남 성	92,299	96.7
여 성	1,899	2.0
불 명	1,268	1.3
합 계	95,456	100.0

자료 출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 '10.12~'15.12월까지 5,505건 접수, 4,777명을 전시납북자로 결정, '17.6위원회 활동 종료

○ 전시납북 피해자 지원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에 의거,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전시납북피해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또한, 전시납북피해자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매년 1억원)을 지원

문 의 처

02)6788-5269